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995
----------	-------

발의연월일 : 2026. 2. 24.

발 의 자 : 김정호 · 허종식 · 윤후덕
이연희 · 임미애 · 서왕진
김남희 · 박 정 · 허성무
이수진 · 전진숙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회는 주요 정책을 수립하고 경제적·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현안을 신속하게 파악하여 특화된 대책을 마련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행정자료를 적시에 제공받는 것이 중요함에도 국회가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으로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통계작성에 사용된 기초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부족하여 정책분석과 입법과정에서 필요한 행정자료를 적시에 제공받고 활용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공공기관에 대하여 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에 국회 소속기관을 포함하고, 국가데이터처가 통계자료 작성에 사용한

기초자료와 생산·가공·분석한 데이터를 국회 소속기관 등이 직접 분석하기를 원하는 경우 제한된 범위에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4항 및 제24조의3 신설).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까지”를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제7항”을 “제8항”으로 한다.

④ 「국회법」에 따른 국회사무총장, 국회도서관장, 국회예산정책처장, 국회입법조사처장 및 「국회미래연구원법」에 따른 국회미래연구원장(이하 “국회소속기관장”이라 한다)은 정책분석과 입법과정에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24조의2제3항 중 “제24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제24조제5항부터 제9항까지”로 한다.

제2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3(통계데이터의 제공)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

는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정책의 평가 및 연구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통계자료 작성에 사용된 기초자료와 국가데이터처장이 생산·가공·분석한 데이터(이하 이 조에서 “통계데이터”라 한다)를 직접 분석하기를 원하는 경우 국가데이터처 내에 설치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내에서 통계데이터를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통계데이터는 개인정보를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상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1. 국회의원

2. 국회소속기관장

3.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4.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5. 그 밖에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제공된 통계데이터를 알게 된 자는 그 통계데이터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통계데이터의 제공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제4항제1호 중 “제24조제7항”을 “제24조제8항”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자료의 제공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통계데이터 제공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통계데이터를 제공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4조(행정자료의 제공) ① ~ ③ (생략) <u><신 설></u>	제24조(행정자료의 제공)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국회법」에 따른 국회사무총장, 국회도서관장, 국회예산정책처장, 국회입법조사처장 및 「국회미래연구원법」에 따른 국회미래연구원장(이하 “국회소속기관장”이라 한다)은 정책분석과 입법과정에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u>
<u>④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국가기밀, 개인과 기업의 중대한 비밀의 침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u>	<u>⑤ -----</u> <u>제4항까지-----</u> ----- ----- ----- ----- -----.
<u>⑤ 공공기관의 장이 제4항에 따라 행정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그 제공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요청기관의 장과 제</u>	<u>⑥ -----제5항--</u> ----- ----- -----

공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⑥ 제4항에 따라 행정자료를 제공받는 자는 제공받는 자료의 분실, 도난,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물리적 조치(이하 “정보보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⑦ 제4항에 따라 행정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그 자료를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행정자료 제공기관의 장은 해당 행정자료를 제공받는 기관의 장이 제6항에 따른 정보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7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행정자료의 제공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24조의2(사법기관 등의 자료 제공) ① · 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에 관

--.

⑦ 제5항

-----.

⑧ 제5항

-----.

⑨

----- 제7항

제8항

-----.

제24조의2(사법기관 등의 자료 제공)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하여는 제24조제4항부터 제8항
까지를 준용한다.

④ · ⑤ (생략)

<신설>

-----제24조제5항부터 제9항
까지-----.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24조의3(통계데이터의 제공)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정책의 평가 및 연구 등에 활
용하기 위하여 통계자료 작성
에 사용된 기초자료와 국가데
이터처장이 생산·가공·분석
한 데이터(이하 이 조에서 “통
계데이터”라 한다)를 직접 분
석하기를 원하는 경우 국가데
이터처 내에 설치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시설 내에서 통계
데이터를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통계데이터는 개인정보를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확인
할 수 없는 상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1. 국회의원

2. 국회소속기관장

3.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
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4.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

	<u>른 지방자치단체의 장</u> <u>5. 그 밖에 「정부출연연구기관</u> <u>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u> <u>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u> <u>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 등</u>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u> <u>② 제1항에 따라 제공된 통계</u> <u>데이터를 알게 된 자는 그 통</u> <u>계데이터를 목적 외의 용도로</u> <u>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u> <u>③ 제1항에 따른 통계데이터의</u> <u>제공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u> <u>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제41조(과태료) ① ~ ③ (생략)	제41조(과태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 ----- -----.
1. 제24조제7항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행정자료(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제외한다)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한 자	1. 제24조제8항----- ----- ----- ----- -----
2. ~ 5. (생략)	2. ~ 5. (현행과 같음)
⑤ (생략)	⑤ (현행과 같음)